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0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백혜련 · 조계원 · 서영석
이원택 · 용혜인 · 전진숙
진선미 · 이수진 · 김 윤
권향엽 의원(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업무 종료”를 “목적 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을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를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업무 종료”를 “목적 달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6조의3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장에 제7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7(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① 제18조 및 제76조의2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②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정보 주체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주체의 권리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 ----- ----- ----- ----- ----- ----- ----- ----- ----- ----- ----- ----- ----- -----

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개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1. ~ 6.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u>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u>사실</u>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2호의 경우에도 <u>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u> <u><신설></u> ⑧·⑨ (생략) <u><신설></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u>목적 달성</u>-----. ⑦ ----- ----- ----- <u>내용을</u>-----. 1.·2. (현행과 같음) 3. -----<u>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u>목적 달성</u>----- 4. <u>제76조의3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u> ⑧·⑨ (현행과 같음) <u>제76조의7(역학조사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① 제18조</u>
---	--

및 제76조의2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
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
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
리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
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
리

②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